

# 공 시 송 달 공 고

## 이륜차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분
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(보험등의 가입의무) 및 동법 시행령 제3조(책임보험금 등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륜차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.

### 1. 공고대상

성 명	생년월일	주 소	이륜차번호	부과 금액
김**	98.08.21.	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53길 2*	대구남바8364 대구달서사9939	174,500원

2. 공고기간: 2020.10.26. ~ 2020.11.10(15일간)

### 3. 공고내용

가.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(보험등의 가입의무) 및 동법 시행령 제3조(책임보험금 등)의 규정을 위반에 대하여 이륜차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고지서와 재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오니, 기한 내 주민센터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반사항: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

부과 근거법령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(보험등의 가입의무) 및 동법 시행령 제3조(책임보험금 등)

나.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)에 따라 최초납기 경과 후 5% 가산금, 매월 1.2%의 증가산금이 부과되며, 지방세법 제28조(체납처분) 및 국세징수법 제24조(압류의 요건)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체납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저동 행정복지센터 이륜자동차 담당자(☎053-662-385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0월 26일

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**장**

